

제352회 정례회  
2016. 11. 24.(목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02일

### 3. 제안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기간 종료(17.01.12.)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
-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(사직동)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
- 수탁기관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
  - ※ (현)수탁기관 : 학교법인 충청학원(2014. 1. 13 ~ 2017. 1. 12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
- 사 업 비 : 667백만원(도비 100%) ※ 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 주요사무
  -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 증진사업
  - 노인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소득보장·재가복지에 관한 사업
  - 노인평생교육 및 복지후생사업,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 사업
  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

## 4. 검토의견

### ○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
- 본 동의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, 「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내용으로,
-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.

### ○ 종합의견

-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 법인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, 5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단일 서비스 보다는 공공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<sup>1)</sup>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,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른 효과는 경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전달비용 절감, 서비스의 질적 향상, 전문성 제고,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적 대응이라 할 수 있음.
-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

---

1) 「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(사업 및 기능) 노인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사업
2. 노인평생교육 및 복지후생사업
3.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의료 재활사업
4. 취미생활,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증진 사업
5.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

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 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인적·물적 자원 확보 및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 파악에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에 대한 전문적 기술 축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고 볼 수 있음.

- 따라서,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도에서 직영 시 동일한 인력 규모일 경우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효율성 또한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,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관리·운영하는 것은 타당하고 사료됨.
- 다만,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, 공정성, 투명성, 객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,
- 또한, 수탁기관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과 및 성과평가 그리고 경영에 관한 합리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**참고자료**

## 시도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현황

| 시도 | 조례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       | 위탁운영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주체<br>(수탁법인)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충북 |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<br>설치 및 운영조례    | '99.07.30 | 사회복지법인,<br>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| 학교법인<br>충청학원       | '14. 1. ~<br>'17. 1    |
| 대구 |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<br>설치 및 운영 조례 | '95.04.10 | 사회복지법인,<br>노인복지 관련<br>비영리법인 및 단체 | 아시아복지재단            | '12. 1. ~<br>'17. 12   |
| 광주 |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<br>복지관 운영 조례   | '03.11.15 | 사회복지법인,<br>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| 재단법인 천주의<br>성요한수도회 | '14. 11. ~<br>'19. 11. |
| 대전 |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조례               | '83.05.07 | 사회복지법인,<br>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| 대한노인회<br>대전광역시연합회  | '14. 10. ~<br>'18. 10. |
| 울산 |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<br>운영 조례        | '99.12.31 | 사회복지법인,<br>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| 울산광역시<br>사회복지협의회   | '16. 1. ~<br>'18. 12.  |
| 전북 |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<br>및 운영조례     | '97.01.10 | 노인회,<br>사회복지법인,<br>비영리법인         | 대한노인회<br>전북연합회     | '15. 1. ~<br>'19. 12.  |
| 제주 |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<br>설치·운영 조례   | '14.01.03 | 사회복지법인,<br>노인 관련 비영리<br>법인 및 단체  | 제주태고복지재단           | '16. 1. ~<br>'18. 12.  |

※ 노인복지회관 관련 개별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민간위탁 현황임